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
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21179호, '25.12.2 공포, '26.6.3 시행)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(이하 '특화단지'라 한다)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가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주체가 확대됨에 따라, 체계적인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정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를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명확히 함(안 제30조제1항)
- 나.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려면,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30조제2항)
- 다. 특화단지 지정, 해제, 범위의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,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함(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)
- 라.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심의 지원, 지정 후 공고 등의 후속절차

규정 및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현행화(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는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관할 지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”로, “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”을 “를 지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인접지역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특화분야 혁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
2. 스마트도시서비스·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한 지역
3. 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혁신기술·서비스의 실증 및 산업 지원 기반을 갖춘 지역
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

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행계획은 종합계획 및 관할 지역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2항제1호 중 “대상지”를 “대상지, 목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시장·군수가”를 “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,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.

2. 규제특례 및 실증 지원계획

3.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전략 및 민·관 협력체계 구축

4.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·운영 계획

제3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”을 “제3항, 제4항, 제5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면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특화단지를 지정·해제 및 범위의 변경을 하였으면”으로, “도시”를 “구역”으로, “관보와”

를 “관보 또는 공보,”로, “지정을 요청한 시장·군수”를 “지정 등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한 특화단지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특화단지가 제1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) ① <u>시장·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(이하 “특화단지”라 한다)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u>	제30조(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) ① <u>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관할 지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---를 지정---</u> .
<u><신 설></u>	<u>1. 인접지역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특화분야 혁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</u>
<u><신 설></u>	<u>2. 스마트도시서비스·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한 지역</u>
<u><신 설></u>	<u>3. 정보시스템 연계 등 스마트 혁신기술·서비스의 실증 및 산업 지원 기반을 갖춘 지역</u>
<u><신 설></u>	<u>4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</u>
② <u>시장·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면</u>	② <u>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직접</u>

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특화단지 지정 요청 대상지
및 사업 내용

2. 지정요청 사유
<신 설>

<신 설>

3. 시장·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·인력 등의 명세

4. (생략)
<신 설>

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시행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행계획은 종합계획 및 관할 지역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.

1. ----- 대상지,
목적 -----

2. 규제특례 및 실증 지원계획

3.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전략 및
민·관 협력체계 구축

4.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·운영 계획

5.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-
--

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·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,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

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 지사가 지정한 특화단지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 지사는 특화단지가 제1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
⑥ ----- 제3항, 제4항, 제5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-----.

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 지사는 특화단지를 지정·해제 및 범위의 변경을 하였으면 -- -- 구역 -----

공고하고 <u>지정을 요청한 시장·군수</u>,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	-- 관보 또는 공보, ----- ----- <u>지정 등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</u>----- -----. ⑧ ----- 제7항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097